

● 제287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3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외 3명 공동발의, 찬성 28명)
- 나. 제출일자 : 2019년 5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나.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및 자원 확보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건강돌봄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건강돌봄서비스

- 제정안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건강 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의미함.
- 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건강돌봄서비스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건강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는 재가(在家)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게 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을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 2018년 건강돌봄팀 구성은 다음과 같음.

4개구 29명 건강돌봄팀 구성 운영

- 마을의사 4, 간호사 6, 방문간호사 3, 영양사 3, 물리치료사 (작업,운동) 3, 사회복지사 4 담당팀장 4, 정신건강전담요원 1, 행정직 1

- 제정안 제4조는 이 건강돌봄팀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이는 ‘커뮤니티 케어’¹⁾로 볼 수 있음. 서울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서울케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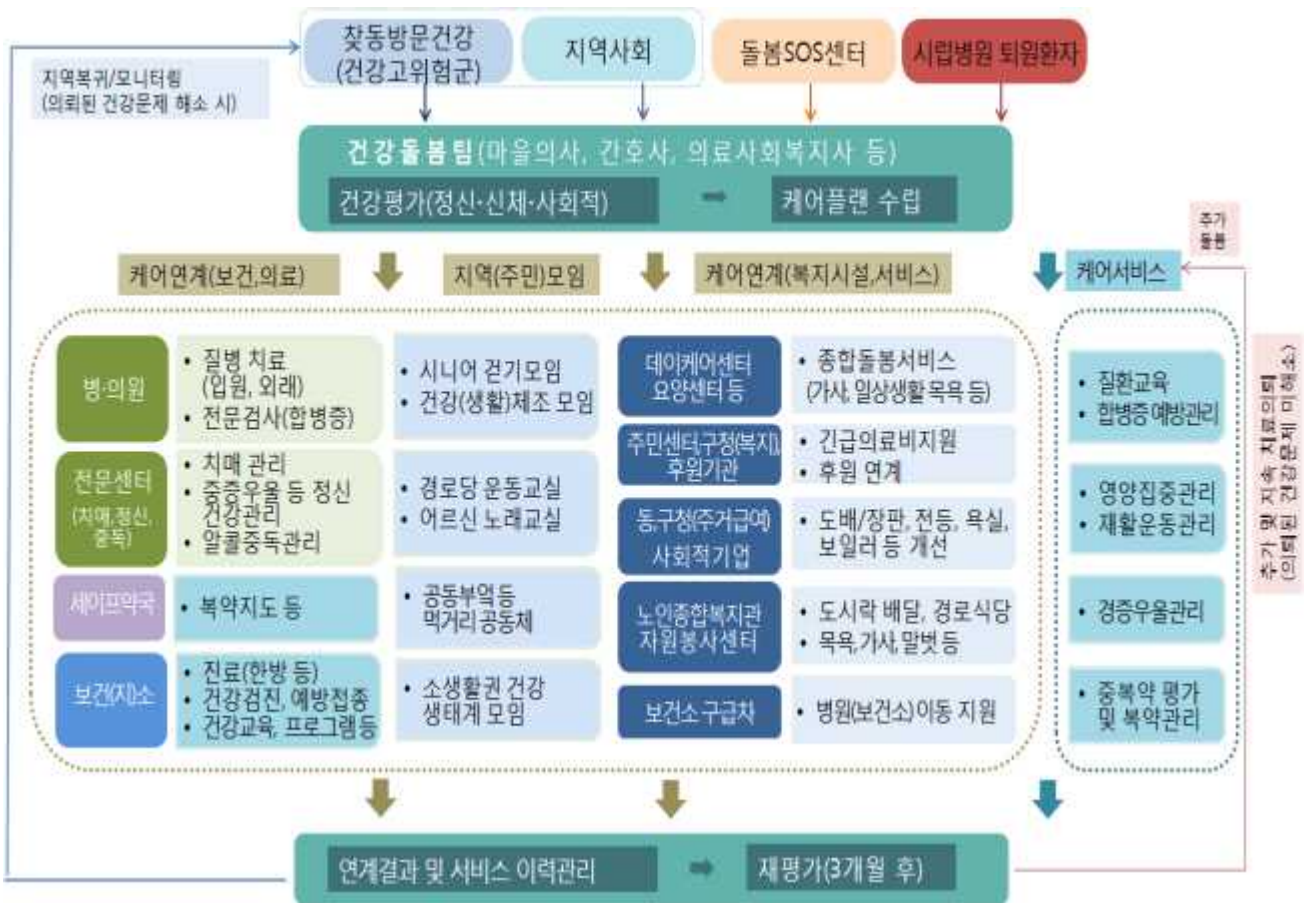
나.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포괄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시장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해야 한다고 하고,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제6조는 건강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민건강국의 싱크탱크 조직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역할설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정책결정의 필요성

- 최근의 보건복지의료정책은 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리우는 최근의 정책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제정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찾동이나 지역사회, SOS센터, 시립병원 퇴원환자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건소의 건강돌봄팀이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적절한 자원의 연계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내담자의 지역사회 재활을 돕고, 시간을 두고 추적 하여 개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임.

- 현 시점에서 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그림과 같이 광범위한 서비스 안을 담고 있음.
- 제정안은 서비스의 틀을 제안한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의 시행 이후에 조정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조례안의 통과 이후에는 조례안의 틀을 바탕으로 의회의 정책건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건강돌봄서비스

- 특히, 사업의 시작단계(발굴, 의뢰)에서 시민건강국과 복지정책실이 같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집행부서의 고질적인 병폐

인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서비스간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의회의 정책견인이 필요하다 할 것임.

4 종합의견

- 서울케어로 불리는 서울시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안으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보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임.
- 조례의 심의에 앞서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를 통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